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도이치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투자신탁명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판매회사명 및 상당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T.2073-7114, www.kbstar.com)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부산은행 (T.051-642-3300, www.pusanbank.co.kr)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삼성증권 (T.1588-2323, www.samsungfn.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외환은행 (T.1588-3500, www.keb.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우리투자증권 (T.768-8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하나은행 (T.2002-1111, www.hana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한국씨티은행 (T.3455-2114, www.citi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현대증권 (T.783-6511,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p style="color: red; margin-top: 10px;">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style="color: red; margin-top: 5px;">※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11.07.01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dws-korea.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본문에 기재된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 쪽)

1. 명칭: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코드- 82651)
2. 펀드존속기간: 3년 6개월간
3. 분류: 실물간접투자기구, 단위형, 개방형(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폐쇄형(환매금지형)에서 개방형으로 분류 변경 됨)
4.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II 투자정보(☞본문 2~5 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프리미엄 와인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와인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실물투자신탁.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신탁재산을 세계유명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에 주로 투자(실제 투자비중 80% 수준)하고,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위험을 일정부분 헷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줄임. * 단, 2011년 7월 1일 현재 기준, 모든 와인 자산을 매도함에 따라, 본 펀드는 만기까지 콜(Call Loan) 등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주로 와인실물에 투자하므로 와인자산의 가치하락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펀드에 편입된 와인 실물자산이 만기(최초설정일로부터 3년6개월)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신탁계약기간 연장 가능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위험수준. 주식, 채권등의 일반적인 유가증권 외의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분산투자의 효과를 희망하고 해외 실물자산 투자의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만기상환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dws-korea.com)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현황 (2011.06.13기준)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다른펀드 수	운용중 인 다른 펀드의 자산규모		
	이정원	부장	21개	6,066	도이치자산운용(2005.06-)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6.13 ~11.06.12	09.06.13 ~11.06.12	08.06.13 ~11.06.12		08.05.19 ~11.06.12
도이치 와인그로스	18.84%	3.77%	1.46%		1.44%	

III 매입·환매관련정보(☞본문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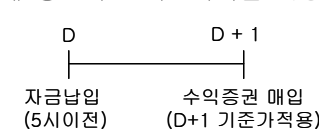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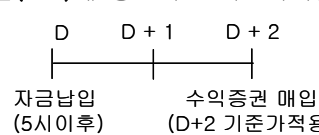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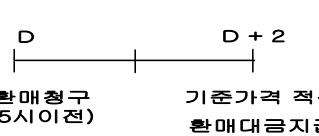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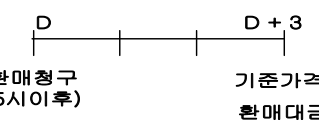
1. 수수료 및 보수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납입시	
	환매수수료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0.0100%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100%	매 3개월
		기타보수	0.0450%	매 3개월
		보수합계 ²⁾	0.0650%	매 3개월
	기타비용 ³⁾	0.0112%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⁴⁾		0.0762%	-	

- 주 1) 선취수수료는 매입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
 2) 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 운용/판매회사보수는 0%로, 총보수는 0.045%로 변경됩니다.
 3) 기타비용은 실물자산의 보관비용, 보험료 등 실물자산과 관련된 비용 및 펀드의 거래소
 상장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
 4)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연간 보수·비용수준.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11.03.15.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수익증권의 매입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코드- 82651)
2. 펀드존속기간	3년 6개월간 (단, 펀드에 편입된 실물자산 등이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본문의 신탁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물자산 등이 전부 매각됨에 따른 정산일 이후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3. 분류	실물간접투자기구, 단위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
해외자산위탁운용회사	덕스턴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td) *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덕스턴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과의 투자일임계약도 2011년 7월 1일자로 해지될 예정입니다.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2008. 5. 19. 최초설정 2011.07.01. 폐쇄형(환매금지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없음 * 2011년 6월 13일 기준 현재 수탁고 : 221.5 억원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실물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만기시점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실물간접투자 기구이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상품입니다.

2. 주요투자전략

프리미엄 와인 실물에 투자하며,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1) 유명 프리미엄 와인 실물에 투자

보르도(Bordeaux), 부르고뉴(Burgundy), 론밸리(Rhone Valley) 등 세계유명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에 주로 투자합니다.

2) 실물자산의 매입

- 생산자 직거래, 와인중개상(Negociants), 브로커(Courtier) 등을 통해 와인매입
- 약관상 설정이후 8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의 와인을 매입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80%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3) 효율적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재량으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 표시 자산의 경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수준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투자 대상 실물자산의 종류 및 비중은 투자당시의 실물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기타 와인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와인 실물자산의 운용 업무는 2009년 6월 1일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가 담당합니다.

*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과의 투자일임계약도 2011년 7월 1일자로 해지될 예정입니다.

5)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와인실물에 투자하므로 와인의 매입 및 처분 관련 시장상황(예: 매수 매도호가 차이, 매입/처분에 소요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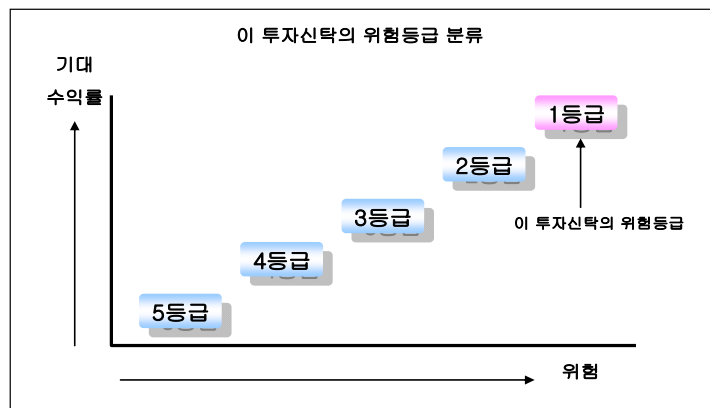
	간, 처분가격, 매입가격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운용사의 재량으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된 헤지수단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보관 및 보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와인 실물에 투자하므로 전문보관업체에 자산보관을 위탁하며 보험등의 가입을 통해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보관업체의 파산, 와인의 변질 및 훼손 등의 원인에 의해 보험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와인의 대체가격 (Replacement Value)으로 변상되나, 변상액이 실제의 시장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실물자산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 와인 실물에 주로 투자하므로 와인 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이고,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를 함에 있어 다양한 자산에의 분산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 이머징 (Next Emerging) 증권 자투자신탁

	탁(주식)
2 등급	도이치 더블드래곤 (Double Dragon)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3 등급	도이치 더블 드래곤 (Double Dragon)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4 등급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5 등급	해당사항 없음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최초 설정시: 1좌 = 5,000원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ws-korea.com)·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능력
이정원	부장	도이치자산운용

※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도이치자산운용의 이정원 부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6.13 ~11.06.12	09.06.13 ~11.06.12	08.06.13 ~11.06.12		08.05.19 ~11.06.12
18.84	3.77	1.46		1.44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10.06.13 ~11.06.12	09.06.13 ~10.06.12	08.06.13 ~09.06.12
18.84	-9.40	-3.0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	환매불가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¹⁾	0.0100%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010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200%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매 3개월
총보수 ²⁾	0.0650%	
기타비용 ³⁾	0.0112%	
총 보수·비용 비율	0.0762%	

주 1) 자산운용회사 보수 가운데 해외위탁운용사가 지급되며, 해외위탁운용사는 지급받은 보수 내에서 와인자문사(FICOFI) 및 투자위원회 보수를 지급합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2) 편입된 실물자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최초의 신탁계약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6개월간)을 경과한 경우, 자산운용회사 보수 및 판매회사 보수가 0%로 변경되어, 총보수는 0.045%로 하락합니다.

주3) 기타비용은 실물자산의 보관비용, 보험료 등 실물자산과 관련된 비용 및 펀드의 거래소 상장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며, 설정액 100억원에 대해 80% 실물자산에 투자한 경우의 추정비용으로서 실제비용은 시장상황 및 계약상황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관비용: 와인자산의 연 0.75% 수준
- 보험료: 와인자산의 연 0.50% 수준
- 거래소 상장 등 비용: 펀드 순자산의 연 0.3% 수준

※ 보관비용: 국내 수탁사(우리은행)와 해외보관대리인(MCN-FICOFI)과의 와인 보관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며, 모든 와인은 와인 저장창고에 보관되어지고 MCN-FICOFI는 와인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가지게 됨

※ 보험료: 매입하는 와인은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계약서(Insurance Certificate)에서 Cover 하는 내용은 화재, 번개, 폭발, 비행기추락, 폭풍, 해일, 눈, 연기, 자동차사고, 폭동, 수재, 동결(Frost), 붕괴(Collapse), 도둑, 병파손, 자연재해, 변질 등이고, 보험변상은 취득가치(Book Value)가 아니라 대체가격(Replacement Value)으로 변상받음

※ 거래비용: 생산자(chateau)로부터의 직거래를 통해 가장 낮은 시장가격에 와인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거래대행사(trading agent: MCN-FICOFI)에 거래건당 4.5% 수준의 거래비용(brokerage fee)을 지급하게 되며, 와인 취득원가에 포함. 대부분의 경우, 생산자 판매원가는 유통마진이 추가되지 않은 가격으로 4.5%수준의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중 도매, 소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와인을 매입할 수 있음.

예) La Tache - DRC 2002의 경우, 중간 도매상인들간 매도호가(professional price)가 병당 600유로, 시중 소매가(consumer price)가격이 병당 877.09유로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동 투자신탁이 거래대행사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병당 395유로(4.5%의 거래비용 포함)로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도매, 소매가격 대비 각각 51.9%, 12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주고 있음

(2008년 3월 31일 기준)

<1,000만원 투자시 예상비용>

	1년후	2년후	3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11원	105,125원	203,689원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예상 비용은 2011년 7월 1일자로 인하된 보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 (14%)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 질 수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간접투자기구는 세법에 따라 운용회사가 제공하는 운용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동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2010 년 8 월 10 일 현재 최고한도 세율 36.3% (소득세 33% 및 주민세 3.3% 포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2010 년 8 월 10 일 현재 최고 한도세율 24.2%(법인소득세 22% 및 법인주민세 2.2% 포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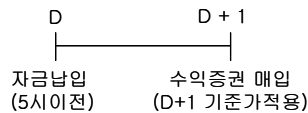
1.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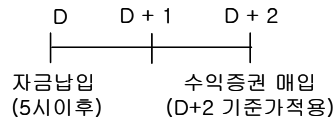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5,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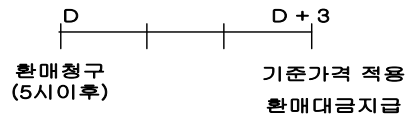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유보하며,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신탁기간중 발생한 순이익으로 하며 이를 전액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다음에 기재된 투자전략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 현재 기준, 모든 와인 자산이 매도 완료됨에 따라, 본 펀드는 콜(Call Loan) 등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에 투자되어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1) 유명 프리미엄 와인 실물에 투자

보르도(Bordeaux), 부르고뉴(Burgundy), 론밸리(Rhone Valley) 등 세계유명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에 주로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향후 시장상황 및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구성 종목 및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2) 실물자산의 매입

- 프리미엄 와인은 유통단계 및 시장형성에 따라 다음의 가격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직거래가격 (Ex-chateau price; 엑스 샤토 가격): 생산단계에서의 가격
 - 도매가격 (Professional dealer price): 와인브로커 및 중개상 간에 형성되는 가격
 - 소매가격 (Retail price): 최종 소매유통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투자자문 및 투자위원회를 통해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가로 와인을 매입(생산자와의 직거래, 브로커 및 중간상인 및 경매를 통한 구매 등)하고, 투자기간(2~3년) 동안 보유한 후, 도매 혹은 소매로 판매함으로써, 시간흐름에 따른 와인 가격 상승 외에도 유통단계에서의 마

- 진을 펀드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프리미엄와인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시적 대규모 매입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방지, 포트폴리오 매입시점 분산 차원 그리고 대규모 매각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와인포트폴리오 구성 시에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8개월 간, 와인실물 매도 시에는 만기전 8개월간으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편입된 와인은 중개상인, 수입업자 및 경매 등을 통해 주로 도매가격으로 매도될 예정입니다.

3) 효율적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이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재량으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재량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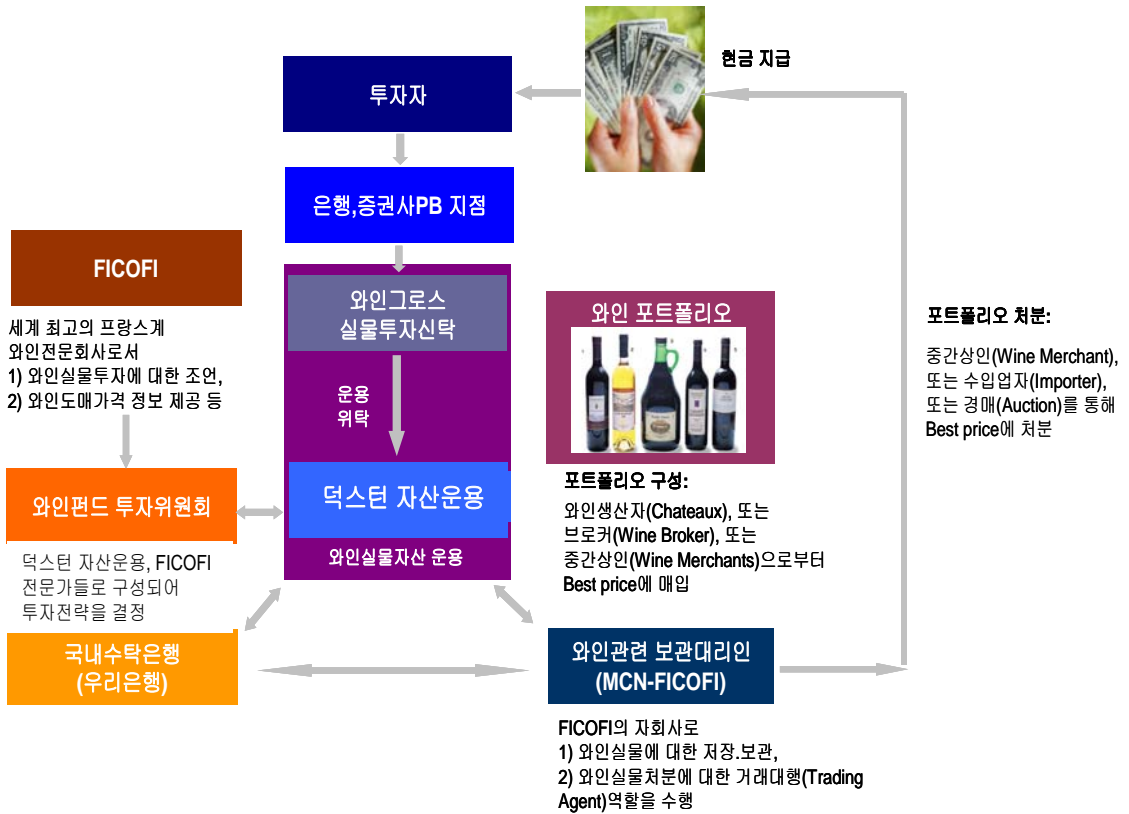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의 재량으로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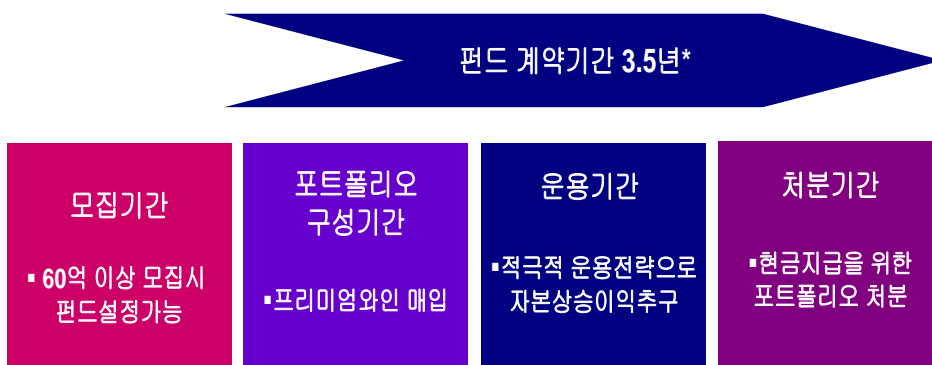
4) 투자 대상 실물자산의 종류 및 비중은 투자당시의 실물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기타 와인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와인 실물자산의 운용 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덕스톤 자산운용 (Duxton Asset Management Pte Limited)**이 담당하였습니다. 단, 실물자산을 전체 매도함에 따라, 2011년 7월 1일자로 해당 투자일임계약도 해지될 예정입니다.

5)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펀드의 구조 예시**



*** 펀드 라이프사이클**



※ 프리미엄 와인의 경우, 거래량의 급증이 발생할 경우 가격 급등, 급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및 처분기간을 약관상 8 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FICOFI

- 이 투자신탁의 와인실물 자산구성 시 자문 역할을 수행
- 프랑스계 세계적 와인 전문회사로서 와인관련 운용, 자문, 물류, 보험, 보관, 유통, 배송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보유
 - 강력한 시장지배력 :
자회사로 'MCN-FICOFI'라는 네고시앙(Negociant: 중간상인)을 보유하여 생산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막강한 지배력 행사
 - Wine Wealth Management Service :
고액 와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3천만 유로(한화 약 385억)의 자금 운용
 - 와인관련 각종 이벤트 :
200회이상의 빈야드(Vineyard) 또는 샤토(Chateaux)에서의 고급 와인 시음회(Wine Tasting) 주관 경험
- 뉴욕, 런던, 파리,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홍콩 등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투자위원회

- Andrew Caillard

- Langton's Wine Auction House 공동설립자
- Langton's Classification of Australian Wine발간
- Australian's Gourmet Traveler Wine잡지 컬럼리스트로 활동
- 호주, 뉴질랜드 와인생산지역을 두루 조사

- Michel Rolland

- 와인양조학자
- 세계최고 와인컨설턴트로 명성보유
- 세계12개국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Bordeaux 컨설턴트연구실 운영
- 포도원과 와인양조를 경영

- Jeannies Cho Lee

- 런던 Institute of the Masters of Wine 수료, 미 워싱턴DC 와인교육자격증 보유, 런던 Wine & Spirits Education Trust(WSET) 졸업
- GrapXpectations Asia Ltd. 설립자 및 경영자
- 와인관련 잡지나 서적 저널리스트나 저자로 활동

- Serena Sutcliffe

- 現 소더비(Sotheby)인터내셔널와인부(Int'l wine department) 헤드
- 와인관련 잡지나 서적 저널리스트나 저자로 활동

* 투자위원회 구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시장의 참조지수: Liv-ex 100 지수

프리미엄 와인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벤치마크는 없으나 참조지수로 런던 인터내셔널 빈티지 100인덱스(Liv-ex 100 inde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된 런던인터내셔널빈티지스스체인지(London Int'l Vintage Exchange)는 와인거래자 및 상인들에게 거래, 결제, 전자정보 등을 제공하며, 동지수는 2001년 7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홈페이지(www.liv-ex.com)에서 와인가격의 참조지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여,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 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와인실물에 투자하므로 와인의 매입 및 처분관련 시장상황(예: 매수 매도호가 차이, 매입/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처분가격, 매입가격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관 및 보험위험	이 투자신탁은 와인 실물에 투자하므로 전문보관업체에 자산보관을 위탁하며 보험등의 가입을 통해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보관업체의 파산, 와인의 변질 및 훼손 등의 원인에 의해 보험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와인의 대체가격 (Replacement Value)으로 변상되나, 변상액이 실제의 시장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와인 실물의 매입시 외화로 거래되게 되므로, 운용사의 판단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환해지를 할 수 있으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징여부는 운용사의 판단하에 결정됩니다.
투자목적 관련위험	이 상품의 투자목적은 와인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나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위험	와인의 거래 및 결제는 일반적인 조직화된 정형화된 유가증권시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와 관련된 결제 등에 있어 지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와인투자는 상장된/ 비상장된 시장, 와인중개인을 통해 병 및 앙프리외(와인품평회를 통한 와인의 매입)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와인자산 인도, 중개인 등의 파산등 거래 상대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문가에 대한 위험	투자신탁 내 와인실물에 대한 투자는 투자전문가에 의해 자문을 받아 수행합니다. 따라서 투자전문가의 의한 효과적인 자문수행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지장을 받을 경우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이 투자신탁은 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펀드 만기시에 지급하므로 수익이 클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실물자산	60% 이상	투자신탁 약관상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와인관련 실물자산에 투자하며, 실제 운용시에는 80%수준으로 투자. 단 운용전략, 환경 변화, 가격변동 등에 따라 다소 편입비중이 변동될 수 있음
2)채권 등	40% 이하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은 채권(A-이상) 및 어음 (CP:A3-이상) 등에 투자
3)파생상품에 의 투자	위탁증거금> 신탁재산의 15%이하	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이하"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과 국내 및 외국의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등(이하"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4)기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라) 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8월간

(나)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8월간

(라)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약관 제 37 조 제 1 항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 2011년 7월 1일 현재 기준, 모든 와인 자산이 매도 완료됨에 따라, 본 펀드는 콜(Call Loan) 등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에 투자되어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제한 (약관 제38조 운용제한)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3.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6.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 제1항 제5호, 이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약관 제37조제1항제5호,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 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 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1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실물자산	<p>1.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내 편입 와인자산의 평가는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p> <p>(1)보르도 지역 와인 : ‘Courtier Assermenté’(프랑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와 인브로커)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격으로 “LGC” 에서 제공된 가격으로 평가 * LGC(Les Grand Crus) : 네고시앙(Negociants; 와인브로커)들이 거래 하는 전문가 가격(Professional price)으로 보르도와인의 시장가격을 매도호가를 기준으로 매일 제공해주고 있음. 와인브로커들은 프랑스법 (French Court- "Courtier")에 따라 등록되고 공정한 시장가격을 매일 제공.(http://www.bureau-lgc.fr)</p> <p>(2)그 밖의 다른 지역 와인 : 런던 인터내셔널 빈티지 익스체인지 (London Int'l Vintage Exchange : 1999 년 설립되어 와인상인들에게 가 격, 거래, 결제 정보 등을 제공)가 공시하는 매도호가를 기준으로 평가 * LIV : 보르도와인을 제외한 타지역의 와인 및 기타국가의 Fine wine 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중개상(Merchants)을 위한 전자시장 (Electronic marketplace)의 형태로 와인에 대한 가격제공. Liv-ex 는 독립와인거래소로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UK & Europe 에 있는 중개 상(Merchants)를 대상으로 와인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발표하고 있 음 (www. Liv-Ex.com)</p> <p>(3)단,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와 인의 경우에는 편입 와인자산의 평균취득가격으로 평가</p> <p>2. 평가주기: 매년 5 월 마지막 영업일 및 11 월 마지막 영업일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단, 와인의 최초 매입시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다.</p>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단위형 투자신탁으로서, 최초설정일로부터 10 영업일간은 수익증권의 총좌수 범위내에서 추가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
 등 관련 유의 급을 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유보하며,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신탁기간중 발생
 사항 한 순이익으로 하며 이를 전액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 02)724-7400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 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011.03.31	2010.3.31	항목	2010.4.1~ 2011.03.31	2009.4.1~ 2010.3.31
현금및예치금	18,230	18,290	영업수익	14,234	18,044
유형자산	144	301	영업비용	17,558	17,832
기타자산	6,045	8,136	영업이익	-3,324	212
자산총계	24,418	26,727	영업외수익	33	76
기타부채	6,877	5,385	영업외비용	10	7
부채총계	6,877	5,385	경상이익	-3,301	281
자본금	19,411	19,411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1,678	1,678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3,548	253	세전순이익	-3,301	281
자본총계	17,541	21,342	법인세비용	500	115
부채및자본 총계	24,418	26,727	당기순이익	-3,801	166

4. 운용자산규모

[2011.03.06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648	2,699	235	0	3,508	0	0	1,275	321	0	0	11,685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운용현황 (2011.06.13기준)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다른펀드수	운용중인 다른펀드의자산규모	
이정원	부장	21개	6,066 억원	도이치자산운용 (2005.06~)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T.2073-7114, www.kbstar.com	2001.11 설립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T.051-642-3300, www.pusanbank.co.kr	1954.8 설립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T.1588-2323, www.samsungfn.com	1982.10 설립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T.1588-3500, www.keb.co.kr	1967.01 설립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T.1544-0000 www.wooriwm.com	1969 설립 2005.4 우리투자증권출범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T.2002-1111, www.hanabank.com	1991.07 은행으로 전환 2005.1 하나금융그룹 출범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T:3455-2114, www.citibank.co.kr	1967.9 설립
현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T.783-6511 www.youfirst.co.kr	1962.6 설립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장부 및 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광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전화번호	02-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년 6월 15일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34 번지 대일빌딩 15층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0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ws-korea.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용어정리
용어	내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5,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영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

	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도이치 DWS 와인그로스 (Wine Growth) 실물투자신탁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_____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